

스포츠시설 이용약관에 관한 연구

최 병 규*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이론적 검토 |
| II. 해당약관 | 1. 표준약관제도의 문제점 |
| 1. 스포츠시설이용약관과 분석 | 2. 약관의 무효여부의 판단기준 |
| 2. 단체상해보험약관 | IV. 스포츠시설이용 약관제도 개선방향 |
| | V. 결론 |

I. 머리말

현대인에게 건강은 더 없이 중요한 가치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주변의 스포츠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용약관에는 일부 불공정한 조항이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표준약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리베라호텔의 피트니스클럽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검토, 분석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스포츠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단체상해보험의 문제점을 예시적으로 검토한다.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Ⅱ. 해당약관

1. 스포츠시설이용약관과 분석

1.1.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1.1.1. 약관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하였다(표준약관 제10048호). 그 가운데 계약해지, 손해배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 ③ 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 ①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 ②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기기의 파손 등 체력단련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소지품의 보관)

- ①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⑥ 제5항에 의해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제4항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⑦ 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1.1.2. 분석평가

소지품의 보관에 대한 이곳의 표준약관내용을 상법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6항에서 약관규정 이외의 기타의 경우에는 상법 제151조 이하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이 상법의 내용이나 그 해석론과 일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상법 제153조에 의하면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규정은 임치물과 휴대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 객은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접객업자로 하여금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며 객은 공중접객업자에게 고의가 없는 한 보통의 물건으로서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에 명시한 가격은 실가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고가임을 표시하는 상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152조 내지 제153조의 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와 별도로 공중접객업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운송인이나 창고업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152조의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간에는 청구권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²⁾ 다만 청구권경합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상법 제153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염려가 있다. 이 문제는 청구권경합설을 적용하되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또한 타당하다. 그리고 고가물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지는지가 문제된다. 이 때에는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여전히 저야 할 것이다.³⁾ 그런데 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153조의 취지에서 볼 때 공중접객업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⁴⁾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3)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박영사, 2008), 540쪽.

4)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2판(박영사, 2009), 364쪽.

이와 같이 고가물의 경우 객이 맡기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물로서도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의 해석으로서 통설인데 이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10조 제6항에서 “제5항에 의해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제4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보다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법해석에서는 벗어나는 쪽으로 규정함에 특이성이 있다.

1.2. 리베라호텔 피트니스클럽 이용약관

1.2.1. 약관내용

회칙 제9조(회원권 소멸 및 일시정지)

본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회원은 클럽에 등록한 분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의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회원권은 자동 소멸된다.
2.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1) 회비, 기타의 지불을 3개월 이상 미납하고 회사의 납입독촉에 불응하였을 때
 - 2) 본 회칙 및 클럽이 정하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3)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 4) 회원카드를 본인이외에 대리 사용케 했을 때
 - 5) 기타 회원으로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회칙 세칙 제5항(책임사항)

1. 회원이나 동반객이 클럽의 제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2. 회원 카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3. 회원이나 동반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괴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회원이 변상할 책임을 진다.

1.2.2 분석평가

리베라호텔의 약관 가운데 회칙 세칙 제5항(책임사항) 제1호 부분에서 “회원이나 동반객이 클럽의 제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내용은 불공정성의 소지가 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설제공자가 지는 것이 합당하다. 고객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이나 동반객이 클럽의 제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

2. 단체상해보험약관

2.1 약관과 분쟁발생

2.1.1 문제의 경과

(가) 쟁점 사안

방학 중 A대학교 M캠퍼스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장해에 대하여 약관상 캠퍼스 생활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고경위

- 2006년 3월 31일 : 신종단체상해보험 체결
- 2006년 7월 11일 : 축구하던 중 우측 슬부 부상(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 2008년 12월 9일 : 보험금 청구

- 2009년 1월 2일 : A대학교 학생 복지처로 동아리 회원명단 및 수업참여사실 문의하나 확인거부
- 2009년 1월 21일 : 법무법인 소명 법률자문의뢰
- 2009년 1월 29일 : 법률자문회신(방학 중 친목을 위한 경기로 면책)
- 2009년 3월 25일 : 1차 면책안내
- 2009년 6월 9일 : 2차 장해 청구(A대학교동아리 명단 추가 제출)
- 2009년 6월 15일 : 법무법인 소명 2차 법률 질의
- 2009년 6월 17일 : 법률질의 회신(동아리 회원간 경기이나 교육 활동과 관련 없으므로 면책의견임)
- 2009년 6월 24일 : 최종 안내 및 면답시행

(다) 고객 요구사항

A대학교 M캠퍼스 내 운동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학교 동아리 소속으로 방학 중 축구모임으로 연습하다 사고 발생하였으며 충분히 캠퍼스생활 중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라) X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상부서 검토의견

약관상 “캠퍼스 생활 중” 이란 등·하교를 제외하고 ① 교육기관 수업 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말함), ②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③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본 건에 대하여 법률 질의한 결과 비록 사고 장소가 캠퍼스 운동장이기는 하지만 사고당시 방학기간인 점, 피보험자는 계절학기 및 기타 수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또한 교내 승인한 축구동아리 회원이긴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개인적인 축구 활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므로 약관상 “캠퍼스 생활 중” 사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1.2 해당약관

X 보험회사의 신종단체상해보험(2)의 ‘캠퍼스 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특정 단체의 캠퍼스 생활 중에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의 캠퍼스 생활중이란 아래의 경우(등학교 중은 제외합니다)를 말합니다.

1. 교육기관 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말함)
2.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합니다)

2.2. 분석 평가

약관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종단체상해보험약관 제1조 제3항 제2호이다. 다른 부분의 내용과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

기관에 있는 동안”이라는 내용은 체계가 맞지 않는다. 특히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이 과연 이 사건에서처럼 방학 중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 동항 제1호와 제3호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만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지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약관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현행약관의 해석상으로는 부득이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Ⅲ. 이론적 검토

1. 표준약관제도의 문제점

최근 2004년과 2007년에 약관규제법이 개정되었다. 그 배경에는 표준약관제도를 강화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었다.

1.1. 2004년 개정

2004년 1월 20일 약관규제법이 개정되었다(법률 제7108호). 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 (1)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2항).
- (2)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5)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2008), 22쪽.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권고하고, 당해 사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

-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準約款 標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 2 제5항 및 제7항).

1.2. 2007년 개정

약관규제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되었다(법률 제8632호).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 개정이유

대부분 약관이 한자 및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이다.⁶⁾

1.2.2 개정조문

약관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6) 공정거래위원회, 앞의 책, 23쪽.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
·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
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
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 중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중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1.3 개정의 평가

2004년 개정의 내용은 표준약관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의 강화는 세계적인 약관규제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거래조건이 통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체제상 적합하고 다만 그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2004년 개정법은 거래조건이나 (무형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그 자체를 획일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상품과 거래조건을 완전히 개방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을 전제로 하기는 하여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조

건을 틀에 맞추려는 표준약관의 강화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 오히려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소송수행을 대신해주는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이나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등 소비자소송용이화 조치를 약관분야에서도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은 환영하여야 한다. 소비자들이 약관을 잘 안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글씨가 작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 고객들이 약관에 친숙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약관의 무효여부의 판단기준

2.1. 일반조항과 신의성실

2.1.1. 일반조항

우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내용통제의 일반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다.⁷⁾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적용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6조 제2항에서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6조 제2항 제1호),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6조 제2항 제2호),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제6조 제2항 제3호)

7) 약관규제에서의 신의성실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는 이은영, 약관규제론(박영사, 1984), 142쪽 아래 참조

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⁸⁾ 약관규제법이 약관의 내용통제를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⁹⁾

첫째, 일반원칙은 약관의 직접적 내용통제의 근본취지를 실정법화한 것이다. 즉,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한 경우는 무효가 된다는 취지를 실정법화한 것이다. 약관규제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약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통제가 실정법상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일반원칙은 약관규제법의 핵심부분으로서 약관규제법의 근본 취지와 보호방향을 밝힌 것이다.

셋째, 일반원칙은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고객에 대한 빠짐없는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개별무효사유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에 대하여도 제6조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일반원칙은 고객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게 된다.

2.1.2.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어떤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범으로서 민법에 내제된 법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는 일종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고, 법관에게는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을 하는 기준으로서 재판규범이기도 하다.¹⁰⁾ 민법상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9)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법학 제30호 제1권(경희대학교 법학연구회, 1995), 88-89쪽.

10) 김효신, “약관규제의 일반원칙과 수정해석”, 법학논고 제13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

일반원칙으로 선언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규제하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먼저 적극설의 입장에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을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관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률과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권리·의무가 생기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표준으로 삼을 것이 요청된다고 한다.¹¹⁾ 다음으로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고려의 명제’에 한정되며, 민법 제2조는 법원의 법형성력을 끌어낼 수 없다고 한다. 민법 제2조는 이미 존재하는 권리적 보장의 수정을 위한 이익교량의 수단에 불과할 뿐,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평규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¹²⁾ 사적자치의 원칙이 허용되는 계약법 영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관계를 전면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경제적 강자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해 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해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로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다.¹³⁾ 따라서 사업자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그 약관은 신의성실의

소, 1997), 260쪽.

11) 박윤직, 민법총칙 제7판(박영사, 2002), 62쪽.

12) 이영준, 민법총칙[한국민법론 I](박영사, 2005), 55쪽.

1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¹⁴⁾ 신의성실의 원칙의 약관규제법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그것은 일반원칙이 민법 제2조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약관의 내용통제도 본질적으로는 사법의 최고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 작업임을 뜻하게 된다.

둘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양적으로 고객의 ‘적지 않은 불이익’이 있으면 그 위반이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고객의 ‘현저한 불이익’이 있어 야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장래의 상대방이 될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약관작성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짓밟는 약관을 만든 경우에 그와 같이 이익형평을 깨뜨리는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다.

2.2 무효여부 판단기준

약관규제의 법리에 의한 내용통제의 핵심에는 부당한 약관을 통하여 사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약자를 부당하고 계약정당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¹⁶⁾ 어떤 약관조항의 무효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 요소로서 계약대상(목적)의 종류, 계약체결에 부수하는 사정, 계약의 다른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약관에 의한 계약조항의 남용성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소비자의 열등한 지위에 주안점을 두면서 계약당사자의 지적 및 경제적 힘 관계를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시설 이용

14) 권오승, 경제법 제5판(법문사, 2005), 507쪽.

15) 장경환, 앞의 논문, 89쪽.

16)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München, 2004), 782쪽.

거래권의 추상적 이해관계, 즉 한편으로는 계약상대방의 소비자성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관사용자인 스포츠시설 제공업자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약관규제법 제6조에서 일반조항을 두어 개별무효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동 조의 일반규정에 의해 보장된 계약상대방의 보호는 약관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을 때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부당히 불리하게 함으로써 이미 규제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소비자를 위해 최상의 상태로 계약이 형성되도록 해주는 것은 내용통제의 목적이 아니다.¹⁷⁾ 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에 의한 내용통제는 법에 의한 통제이다. 즉 통제의 척도는 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듯이 법(Recht)이다. 따라서 가격통제 및 순수한 합목적성의 견지는 통제척도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주어진 법에서가 아니라 공평성이라는 법이외의 척도에 기인하는 통제는 배제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직권으로 준수해야하는 해당조항의 무효를 명하는 규정이다.¹⁸⁾ 더 나아가 약관규제법 제6조 이하에 의한 내용통제는 개별사안을 뛰어넘는 일반화된 척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¹⁹⁾ 그러한 통제는 법규범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공평성의 견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다.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를 위해서는 계약의 본성에서 본질적인 권리의무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계약의 본성은 계약자유의 범주에서 계약당사자의 특별한 이익을 고려하고 보호하며 또 그로써 계약에 고유성을 부여하는 계약의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정해진다. 한편 어느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전과 후의 권리의무의 분배상황

17) BGH, NJW 86, 2369; v. Hoyningen-Huene, *Die Inhaltskontrolle nach § 9 AGB-Gesetz*(Heidelberg, 1991), Rdn. 23.

18) v. Hoyningen-Huene, 위의 책, Rdn. 39.

19) Ulmer/Brandner/Hensen, *AGB Kommentar*, 4. Aufl.(Köln, 1982), 313쪽.

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고객의 권리나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의무가 제한될 때 불이익한 조항으로 인정된다.²⁰⁾ 그리고 불이익은 구체적인 고객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래에 임하는 평균적 고객집단의 표준적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²¹⁾ 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의 금지는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익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²²⁾ 가령 계약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때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조항이다.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문제 삼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심사를 할 경우 계약에 전형적인 이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러한 전형적인 지도형상은 또 약관통제의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²³⁾ 이러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의미에서 계약의 본질적 권리는 당사자 자신이 본질적이라고 본 내용 또는 계약의 전형적 이해관계상황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요구될 수 있는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동 제3호에 의하면 계약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권리의무의 제한으로써 계약목적달성이 위태롭게 된 때에만 불공정한 약관이 된다. 여기서 계약의 목적은 합의의 내용에 의해 주어지는 거래의 목표 및 계약에서 추구하는 경제적 효과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양당사자의 공동된 목표가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당사자에 의해 서만 추구된 목적도 그것이 합의의 내용으로 고양된 때에는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는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표를 위태롭게 하는 것만을 방지하려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보호방향에 합치된다. 계약목적의 예를 들면 은행에서의 이체를 위임한 경우 금전을 지시

20) v. Hoyningen-Huene, 앞의 책, Rdn. 291.

21) 정호열, 경제법(박영사, 2006), 509쪽.

22) Ulmer/Brandner/Hensen, 앞의 책, 310쪽.

23) v. Hoyningen-Huene, 위의 책, Rdn. 283.

된 수취인의 구좌에 이체하는 것이다. 무효약관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의 도달이 계약의 본질적 권리의 제한으로 위태롭게 되어야 한다. 이는 한편으로 추구된 계약효과의 도달가능성이 단지 경미하게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목적이 전적으로 침탈 내지 좌절되는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따라서 계약목적이 전부 또는 일부 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분명하면 족하다.²⁵⁾

일반 약관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및 단체상해보험의 운용에 있어서도 소비자보호를 중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도 무제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스포츠시설 이용거래 및 단체상해보험의 합리성을 위한 제도는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²⁶⁾

Ⅳ. 스포츠시설이용약관 개선방향

표준약관의 보급 및 활발한 사용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별 사업자에 대한 약관심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다는 의미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2002년 우선적으로 회원제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금융기관 여신거래 및 수신·신탁거래약관, 상가분양 및 임대차분양 약관 등에 대한 약관정비작업을 추진·수행한 바 있다. 표준약관의 보급과 함께 사업자에게는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약관규제법

24) Wolf in Wolf/Horn/Lindacher, *AGB-Gesetz*, 4. Aufl.(1999), § 9 Rdn. 92.

25) v. Hoyningen-Huene, 앞의 책, Rdn. 295.

26) 최병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별약정서와 약관규제”, 경영법률 제12집(한국경영법률학회, 2001), 448-449쪽.

제3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주지되어야 한다.²⁷⁾ 한편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약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약관규제법은 추상적인 무효선언과 당해 약관의 장래에 대한 사용금지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부당약관으로 인한 개별 피해를 함께 구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약관심사를 청구하는 피해당사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단체소송제도 도입이 요구된다.²⁸⁾

약관 심결례의 분석결과, 불공정한 약관으로 심결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도 행정부의 감독 하에 있는 인·허가약관이나 공공기업의 약관들도 다수 불공정약관으로 심결 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약관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제도도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에 대한 구별기준도 불명확하여 규제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약관규제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전국 6대도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확한 약관개념을 아는 자는 전체 응답자의 16.1%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업자의 정확한 명시, 설명을 받지 못했고, 30.7%의 소비자는 어차피 계약서의 약관내용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고 아예 읽지도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약관은 인쇄가 조잡하고 글씨가 작으며, 사업자 자신들도 모르는 부정확

27)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8판(세창출판사, 2009), 472쪽.

28) 정부는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단체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는 기업영영을 크게 위축시킨다면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사업자 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제품판매를 금지하거나 약관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5년 2월 17일, A4면.

한 법률용어를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교육은 앞으로 크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이다. 이에 더해 현 약관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앞으로 증가하는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의 확충이 요구된다. 다만, 이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 갖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매년 불공정 판정을 받은 약관에 대한 분석과 정리 작업을 통한 책자를 행정부 내부의 부처 참고용으로 국한하지 말고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일반 국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 및 학교 등에 비치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주로 예방적인 기능에 머물게 되고, 이미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구제는 일반 민사분쟁의 절차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은 비싼 수임료와 법률 서비스의 양과 질의 모든 면에서 선진각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 감정도 동양의 유교사회에 오랜 뿌리를 두어서 소송을 통한 권리관철에서 철저하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이 서로 맞물려 스포츠시설이용 분쟁발생시 약관에 의한 당사자의 현실적인 피해구제는 용이하지 않다. 특히 약관조항으로 문제되는 사안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 일반 소비자의 법 감정이다. 그렇다면 약관에 의한 사후적인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줄여 주는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제도²⁹⁾ 기타 이에 필적할 만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그런데 우선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소비자기본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동 제도에 의해서는 행위의 중지 등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개별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어느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

29) 이에 대하여는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제4판(법문사, 2002), 301쪽 아래 참조.

이 낮을 때 그 약관의 통용을 저지할 수 있는 연결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그러한 약관이 또 다시 사용되어 동일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교 대상은 최근 특허법에서 법원이 산업재산권 관련 소제기 및 판결결과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고 특허심판원장은 동 소송사건 관련 심판의 제기 및 심판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법원(법원행정처)이 가령 특정의 스포츠시설이용약관이나 단체 상해보험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관계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약관규제법에서 둘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관은 스포츠시설이용 분야처럼 대부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기에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2002년 약관관계 개정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소비자신용법 등도 모두 폐지되고 민법에 포섭이 된 획기적인 변화이며, 생명, 신체, 건강 침해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다든지, 계약상대방의 장애여부고려 등 몇몇 변화는 높이 평가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004년 약관규제법 개정내용은 표준약관의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런데 표준약관의 강화는 세계적인 약관규제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작금에는 전자상거래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사이버거래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 이 시점에 디지털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을

탈바꿈시켜야 한다. 현대의 약관은 사회현상이 복잡화함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이버 상에서는 오프라인 약관에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분쟁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계약편입의 문제라든지 자필서명의 문제 등등이 오프라인 거래와는 다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과 연계하여 실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약관거래를 지원하여야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관청의 인가를 완화하는 경향에 있음을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인가는 국가의 후견적 관여인 만큼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장치가 마련되면(가령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제도의 약관분야에의 도입) 관청인가라는 후견적 개입은 후퇴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관에 대한 규제완화의 기운이 불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주요 약관에 대한 사전인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인가를 받도록 하였던 과거보다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것인 만큼 그에 대비한 소비자보호에 힘결이 없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자 의식이 아직까지도 높지 못하고 약관은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점이 부각되는 만큼 불공정소지를 미리부터 차단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효과적이다. 사업자가 약관의 불공정 내용을 근사한 표현이나 비비꼬는 문장으로 포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기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스포츠시설이용 약관분야에서도 문제점을 미리미리 추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보아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문제 있는 스포츠시설이용약관에 대하여는 여러 방면에서 정화노력을 기울여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과 분쟁의 발생빈도가 높은 문제의 약관을 자진하여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관을 중간에 끼워넣어 소비자에게 나중
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의제기를 하려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는
스포츠시설 사업자들과 보험회사들이 지양(止揚)하여야 한다. 겉에서
보아 계약자의 입장에서 투명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³⁰⁾을 스포츠시설이용약관 및 단체상해보험약관에서도 준수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가물의 경우 객이 맡기
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물로서도 변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의 해석
으로서 통설인데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10조 제6항에서
“제5항에 의해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
된 경우 사업자는 제4항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부
분에서는 그보다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규제법
상의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법해석에서는 벗어나는 쪽으로 규정
함에 특이성이 있다. 한편 리베라호텔의 약관 가운데 회칙 세칙 제5항(책
임사항) 제1호 부분에서 “회원이나 동반객이 클럽의 제반시설을 이용하
는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내용은 불공정성의 소지가
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설제공자가 지는 것이 합당하
다. 고객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이나 동반객이
클럽의 제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될 소지가 높다. 또한 단체상해
보험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 약관 제1조 제3항 제2호이다. 다른
부분의 내용과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이라는 내용은 전후 비교상 체계가 맞지 않는다. 특히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이 과연 본문에서 문제된 사건에서처럼 방학 중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애매하게 되어 있다.

30) 이에 대한 과거의 논의로는 Ansgar Staudinger, *Das Transparenzgebot im AGB-Gesetz*,
(WM, 1999), 1546쪽 이하 참조.

동항 제1호와 제3호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만은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약관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지 않게끔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약관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현행 약관의 해석상으로는 부득이 방학 중이라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으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약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바, 이를 법규와 판례의 태도에 맞추고 또 소비자보호 및 법리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고일 2009년 6월 30일, 심사일 2009년 7월 8일, 게재확정일 2009년 7월 14일)

주제어 :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약관의 명시설명, 계약에의 편입, 약관 내용통제, 표준약관, 규제완화, 소비자보호,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불공정약관, 단체상해보험, 캠퍼스스포츠사고

참고문헌

1. 단행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2.
- 권오승, 경제법 제5판, 법문사, 2005.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제4판, 법문사, 2002.
-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8판, 세창출판사, 2009.
- 이기수/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제6판, 박영사, 2008.
- 이영준, 민법총칙[한국민법론 I], 박영사, 2005.
- 이은영, 약관규제론, 박영사, 1984.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2판, 박영사, 2009.
-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6.
- Ansgar Staudinger, *Das Transparenzgebot im AGB-Gesetz*, WM, 1999.
- Hoyningen-Huene, *Die Inhaltskontrolle nach § 9 AGB-Gesetz*, Heidelberg, 1991.
-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München, 2004.
- Ulmer/Brandner/Hensen, *AGB Kommentar*, 4. Aufl., Köln, 1982.
- Wolf in Wolf/Horn/Lindacher, *AGB-Gesetz*, 4. Aufl., 1999.

2. 논문

- 김효신, “약관규제의 일반원칙과 수정해석”, 법학논고 제1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법학 제30호 제1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장경환,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경희법학 제30호 제1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최병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별약정서와 약관규제”, 경영법률 제12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1.

[Abstract]

**A Study on standard contract terms about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Byeong-Gyu Choi*

Nowadays people think that healt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Therefore, many of them visit sports facilities regularly. Standard contract terms, on the other hand, has important roles in modern, mass produc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sports facilities. But the interest of the users can be neglected by the unfair standard contract terms about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This study concentrates on analysing the contract terms about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The contents of standard contract terms about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should be valid in regard of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and jurisdiction. Standard contract terms about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which is made b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some problems. In regard of § 153 Korean commercial law and its interpreta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tract terms should be revised in concord with the common interpretation of that article. The author has also analyzed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Riviera hotel, as an example. One of them should be revised. That is, article 5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describes that the user is always in charge of security in the process of the stay in sports

* Professor, Law School, Konkuk University

facilities of Hotel Riviere. It can be invalid in regard of § 7 korean unfair contract terms act. Finall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group insurance is too vague. Therefore, it should be defined more clearl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the use of sports facilities, in short, has some problems. It should be revised clearly afterwards.

Key Words : use of sports facilities, unfair contract terms, good faith, duty of disclosure, explan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consumer protection, group accident insurance, sports accident on campus